소송 등의 판결·결정(3심 판결)

1. 사건의 명칭	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
2. 원고・신청인	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・아이스텀엔트러스트(주)・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결
3. 판결・결정내용	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자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가 부담한다.
4. 판결・결정사유	이 사건 양해각서는 본 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매수인 측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던 대주주변경승인을 받을 의무는 이니티움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, 이니티움이 그 승인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.
5. 관할법원	대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17년 5월 17일
7. 확인일자	2017년 5월 18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